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99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3 월 20일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대구광역시기본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대구광역시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203002호 [1993.06.14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3.17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
작성기준 대상기간 실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도 12.31.(단 교육부문은 4.1.) • 전년도 1.1. ~ 12.31. • 1.1. ~ 11.30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전년도 12.31.(단 교육부문은 전년도4.1.) • 전전년도 1.1. ~ 12.31. • 매년(1.1. ~ 12.31.) 	- 정책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현행화
작성항목 (통계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7개 부문 219개 항목 - 연혁 2 - 토지 및 기후 5 - 인구 19 - 노동 5 - 사업체 3 - 농림수산업 28 - 광업·제조업 및 에너지 8 - 전기·가스·수도 13 - 유통·금융·보험 및 기타서비스 8 - 주택·건설 18 - 교통·관광 및 정보통신 7 - 보건 및 사회보장 33 - 환경 10 - 교육 및 문화 26 - 재정 5 - 소득 및 지출 6 - 공공행정 및 사법 23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7개 부문 218개 항목(삭제1, 변경104) - 연혁 2 - 토지 및 기후 5(변경1) - 인구 19(변경6) - 노동 5(변경1) - 사업체 3 - 농림수산업 27(삭제1, 변경14) - 광업·제조업 및 에너지 8(변경4) - 전기·가스·수도 13(변경5) - 유통·금융·보험 및 기타서비스 8(변경5) - 주택·건설 18(변경4) - 교통·관광 및 정보통신 7(변경1) - 보건 및 사회보장 33(변경18) - 환경 10(변경5) - 교육 및 문화 26(변경20) - 재정 5(변경2) - 소득 및 지출 6(변경3) - 공공행정 및 사법 23(변경15) 	- 기본통계 표준 서식 표준화에 따른 항목 조정